

울산지방법원 2024. 5. 14 선고 2024가단183 판결 [건물명도(인도)등]

전 문

원 고 A(개명 전 이름: B)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4. 23.

판 결 선 고 2024. 5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. 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31.68㎡를 인도하고,
나. 3,8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‘2024. 2. 3.부터 인도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에 의한’ 금전 청구부분은 취하하였다.).
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상민

별지